

璿源錄

卷之一

Special Edition 2

왕실보첩류의

종류와  
성격 記

글. 성봉현 (충남대학교 연구교수)

## 1. 왕실보첩이란

이제현의 『익제난고(益齋亂藁)』에 의하면 고려 왕실에서도 종녀(宗女)와 종자(宗子)를 수록하는 세보(世譜) 형태의 『왕대종록(王代宗錄)』(김관의찬)과 『경원록(瓊源錄)』 등이 있었다. 그리고 본격적인 왕실보첩이라 할 수 있는 『선원록(璿源錄)』도 고려 후기에 왕명을 받들어 임익(任翊) 등이 편찬한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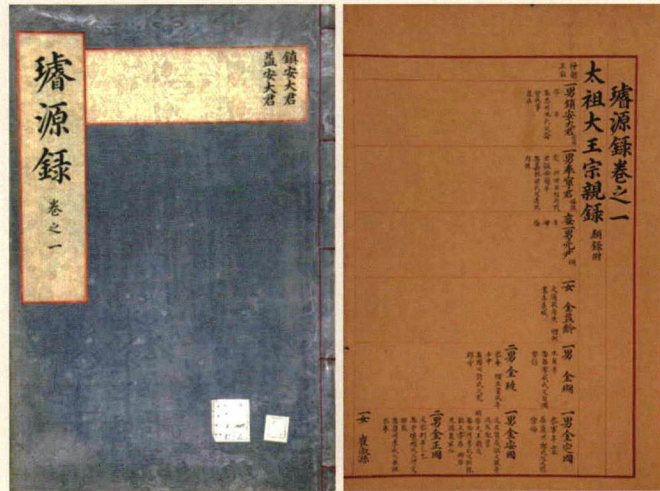
조선도 건국 초에 고려 말의 전통을 계승하여 『선원록』을 편찬하였고, 이어 각종 다양한 왕실보첩을 간행하였다. 조선 시대에 왕실에서 간행한 보첩의 종류는 『선원록(璿源錄)』, 『종친록(宗親錄)』, 『유부록(類附錄)』, 『선원가현록(璿源加現錄)』, 『종친가현록(宗親加現錄)』, 『유부가현록(類附加現錄)』, 『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記略)』, 『돈녕보첩(敦寧譜牒)』, 『어첩(御牒)』, 『열성왕비세보(列聖王妃世譜)』, 『열성팔고조도(列聖八高祖圖)』, 『선원속보(璿源續譜)』 등 약 20여 종에 이른다.

이러한 왕실보첩은 왕실구성원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사회의 핵심 지배층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기본 자료이다. 그리고 왕실구성원과 혼인관계를 통한 상층 지배신분층의 인적네트워크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선사회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또한 사가족보와 편찬방식이 다르다는 점에서 족보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자료이다.

## 2. 왕실보첩의 종류

### 1) 선원록류(璿源錄類)

(1) 『선원록(璿源錄)』



01 『선원록』 : 조선 초부터(태종 9) 작성되어 1428년(세종10)부터는 3년마다 수정되고, 10년마다 중수되었다. (사진제공 : 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 왕실에서 간행한 왕실보첩류 가운데 가장 오래된 족보는 건국 초에 편찬된 『선원록』이다. 조선왕실의 『선원록』은 고려 말에 왕실에서 『선원록』을 편찬하였던 전통에 따른 것이다. 고려 말 왕실에서 간행한 『선원록』이 어떠한 체제를 갖춘 보첩이었는지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선초의 『선원록』 편찬 체제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다. 왕의 일정한 범위 안에 드는 자손을 본종과 외파, 자녀 및 서얼 구분 없이 모두 수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 말의 편찬 체제를 이은 것으로 보이는 선초의 『선원록』이 크게 변화한 시기는 1412년(태종 12)이다. 태종은 왕실의 조계를 서술한 것은 『선원록』이라 하고, '종자(宗子)'를 서술한 것은 『종친록』이라 하고, 종녀(宗女)와 서얼(庶孽)을 서술한 것은 『유부록』이라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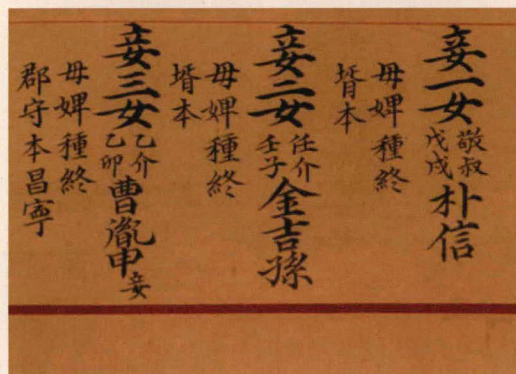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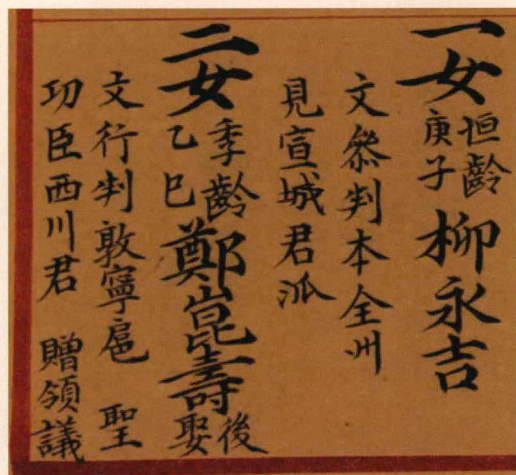
여 왕실보첩을 삼록체제로 구분하여 편찬하였다. 이처럼 태종이 고려시대와 달리 왕실보첩을 3록체제로 분류하게 된 것은 “이원계(李元桂)와 이화(李和)는 태조의 서형제(庶兄弟)이다. 만약 혼동하여 『선원록』에 올리면 후사(後嗣)는 어찌하겠는가? 마땅히 다시 족보(族譜)를 만들어 이를 기록하게 하라.”(『태종실록』, 태종 12년, 10월 26일)에서처럼 왕실의 계통을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다.

1428년 『선원록』은 10년에 1번 개수하고, 3년마다 종실보첩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세종실록』, 세종 10년 10월 24일). 여기서 종실보첩(宗室譜牒)은 태종 12년에 『선원록』에서 분리된 『종친록』과 『유부록』을 가리키는 것이다. 즉 1428년부터는 『선원록』은 10년에 한 번씩 중수하고, 『종친록』과 『유부록』은 매 3년마다 수정을 하였다. 이때 『선원록』의 수록 대상은 내·외 6대손까지로 한정되었다.

선초에 편간된 『선원록』은 임란으로 유실되어 1604년(선조 37)에 선조의 명으로 구천군(龜川君) 수(粹) 등에 의하여 다시 만들어 졌다. 1681(숙종 7)에 왕실 내외의 자손을 순서와 계통에 따라 정밀하게 수정한 『선원록』 51책이 완성되었다. 이때 완성된 『선원록』에는 『종친록』과 『유부록』이 있음에도 본종과 외파를 합하여 수록하였다. 수록의 방식은 한 면을 6단으로 나누어 왕을 기준으로 6대손을 기록하되 본종은 각 종파의 마지막 부분에 추가로 3대를 더 실었다. 즉 『선원록』에는 종성(宗姓)은 9대손까지, 외파는 6대손까지 수록하였다. 이후 『선원록』은 영조 때까지 3년에 한번씩 『당대선원록』을 작성하였으나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중수는 하지 않았고, 정조대 이후로는 『당대선원록』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결국 『선원록』은 1681년(숙종 7) 본이 최종본이다.

『선원록』은 기타 왕실족보나 사가족보와 다르게 여성정보가 비교적 풍부하여 유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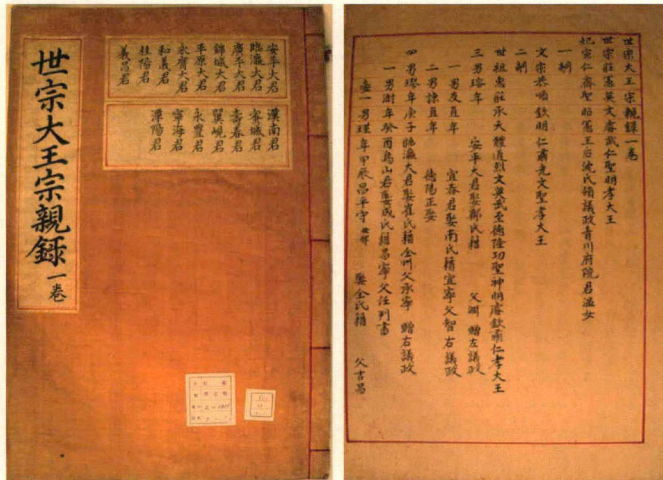
사가족보나 다른 왕실족보에는 찾기 어려운 여성의 이름과 출생 년을 기록하였다. 또한 첩녀(妾女)인 경우에는 모(母)의 신분과 성명을 기록하였고, 딸이 후취로 혼인한 사실, 첩녀가 다시 양반의 첩으로 시집간 사실 등도 기록하였다. 초취와 후취가 있을 경우 자녀의(母)가 누구인지 명확히 하였다. 이런 점에서 『선원록』은 조선 전기 ‘가족’의 실제 모습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이다.



02 『선원록』: 『선원록』에는 조선시대 다른 족보에서 찾아보기 힘든 여성 정보가 기록되어 있다. 즉 여성 명, 생년, 모의 신분, 명 등이 기재되어 있다. 첩의 소생이 다시 양반의 첩으로 시집간 사실 등이 수록되어 있다.

『선원록』은 기타 왕실족보나 사가족보와 다르게 여성정보가 비교적 풍부하여 유용하다.  
 사가족보나 다른 왕실족보에는 찾기 어려운 여성의 이름과 출생 년을 기록하였다.  
 또한 첩녀(妾女)인 경우에는 모(母)의 신분과 성명을 기록하였고, 딸이 후취로 혼인한 사실, 첩녀가 다시 양반의 첩으로 시집간 사실 등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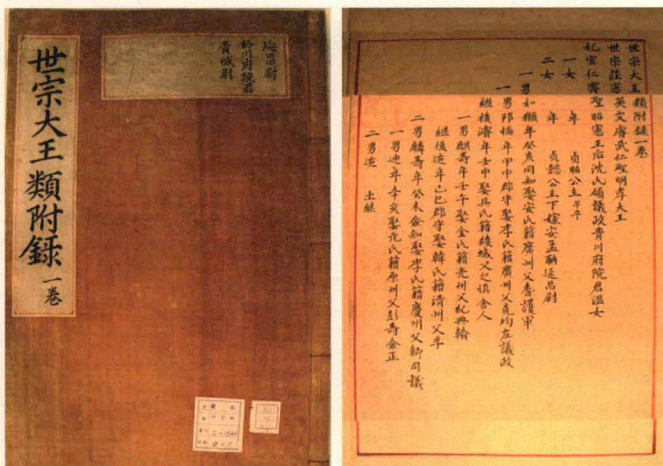
(2) 『종친록(宗親錄)』



03 『종친록』 : 종친록에는 왕의 남계 측 대군과 군의 자손이 적서를 막론하고 수록된다. 남계를 6단에 6대까지 수록하는 것이 보통이다.

『종친록』은 태종이 1412년(태종 12)에 왕실족보를 『선원록』, 『종친록』, 『유부록』으로 세분하여 작성하도록 하면서 시작되었다. 『종친록』은 종친 중 성손(姓孫), 즉 왕의 남계(男系) 자손이 수록되며, 이때 적서(嫡庶) 모두가 기재되는 왕실족보이다. 현재 남아 있는 『종친록』에는 대군(大君)과 군(君)의 자손들이 기재되어 있다. 『종친록』은 각 왕대별로 2부를 작성하여, 하나는 왕부(王府)에 보관하고, 다른 하나는 동궁(東宮)에 간직하였다. 『종친록』의 형태는 왕의 남계 손을 1대에 한단씩 내려가며 기록하였다.

(3) 『유부록(類附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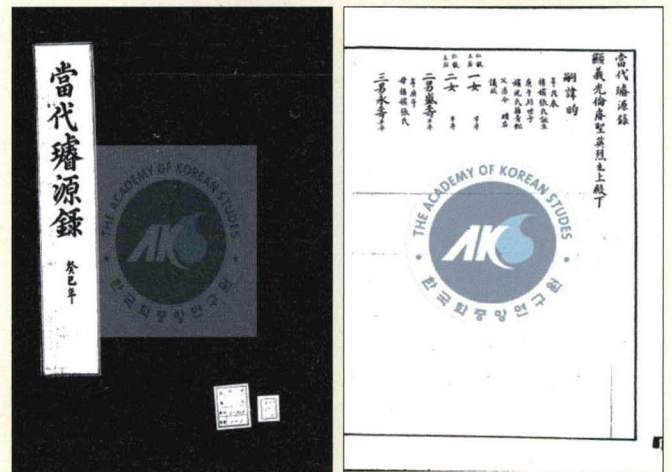


04 『유부록』 : 여계(공주, 옹주의 자손)와 서얼을 수록하였다. 모(母)의 신분과 이름, 딸의 생년, 이름 등이 기록되었다.

『유부록』은 1421년(태종 12)년에 체제를 갖춘 선원록류의 하나로 종녀(宗女)와 서얼(庶孽)의 자손을 수록한 왕실보첩이다. 『유부록』 역시 2부를 작성하여 하나는 왕부(王府)에 간직하고, 하나는 동궁(東宮)에 간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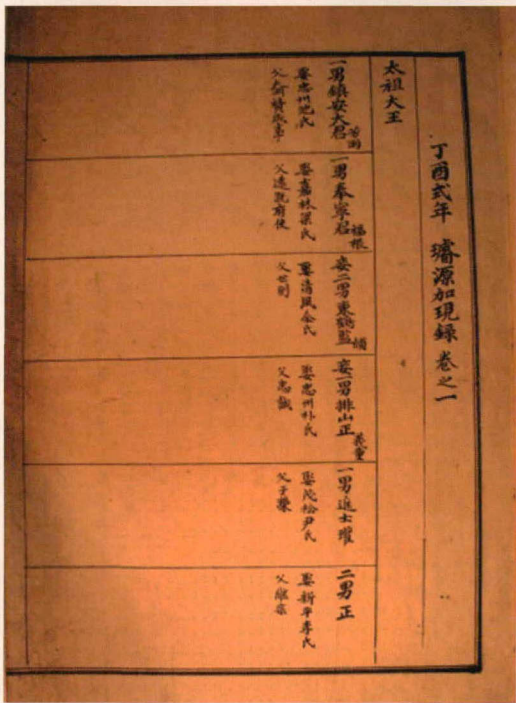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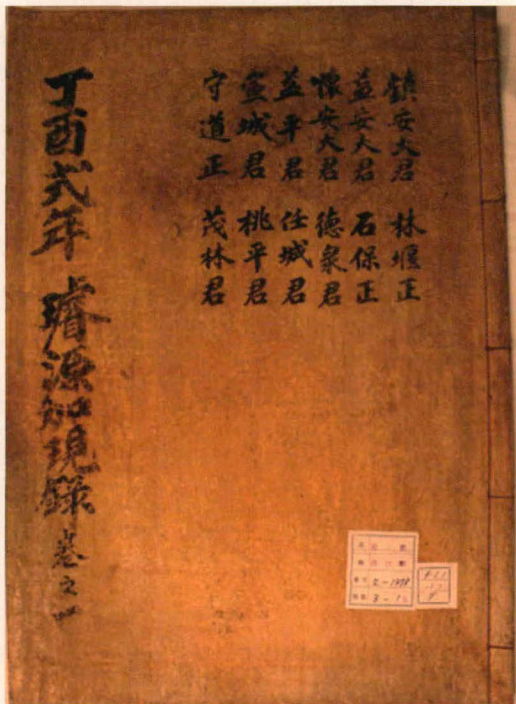
『유부록』에는 왕의 공주·옹주 자손을 5대손까지 수록하였다. 공주의 경우에 출생모후를 기록하고, 공주의 자손들을 한단씩 내려가며 5대손까지 수록하였다. 『유부록』에서 주목되는 내용은 일반족보에서는 생략된 딸(女)의 명(名)과 생년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수록 대상자가 첩의 소생인 경우에는 모(母)의 명(名)과 신분이 양녀(良女) 혹은 비(婢)인지를 기록하였다.

(4) 『당대선원록(當代璿源錄)』



05 『당대선원록』 : 재위 국왕의 자녀들의 변화를 식년마다 수록한 보첩이다

『당대선원록』은 재위 국왕 자녀들의 변화를 식년(式年)마다 수록한 보첩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당대선원록』은 1책에 1장에 그치고 있다. 『선원록』은 1428년(세종 10)부터는 10년에 한번씩 중수하고, 매 3년마다 수정되었다. 따라서 3년마다 수정을 위해 작성된 선원록이 『당대선원록』인 셈이다. 수록방식은 1면을 6단으로 나누고 극행의 우측 2행에 '당대선원록 주상전하(當代璿源錄 主上殿下)'라 기록하고, 그 좌측에 자녀의 차서와 이름(名), 생년, 모후를 기록하였다.



06 『선원가현록』 : 선원록에 누락된 왕의 친족을 추가로 기재된 보첩이다.

2) 『가현록(加現錄)』

『가현록』은 『선원록』에 누락된 왕의 친족을 추가로 기재하는 보첩을 말한다. 이처럼 『가현록』이 『선원록』을 작성한 후에 새로 선원세계단자를 제출한 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원록과 책명이 같을 수밖에 없다. 즉 『선원록』에서 『종친록』·『유부록』으로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현록』 역시 『선원가현록(璿源加現錄)』, 『종친가현록(宗親加現錄)』, 『유부가현록(類附加現錄)』이라 하였다.

(1) 『선원가현록(璿源加現錄)』

『선원가현록』은 1681년(숙종 7) 『종친록』·『유부록』을 수정하여 합본한 『선원록』에 누락된 국왕의 내외자손을 수록한 보첩이다. 『종친가현록』과 『유부가현록』으로 분리되어 작성하였던 것을 통합하여 『선원가현록』이라 하였다. 그러나 『종친가현록』 중심이고, 『유부가현록』은 첨부하는 형식이다. 각 대군(大君)과 군(君)의 후손 가운데 새로 파악된 종자와 첩소생들을 수록하되, 여계(女系; 딸)의 후손들은 수록하지 않았다.

(2) 『종친가현록(宗親加現錄)』

『종친가현록』은 『종친록』에 누락된 대군(大君)과 군(君)의 아들들을 수록한 보첩이다. 수록방식은 국왕과 왕비명을 기록하고 왕자의 차서, 적서, 명(名), 생년(年甲), 작호, 처부의 성명, 본관, 관직 등을 기록한 다음에 그 소생들을 수록 하였다. 『종친가현록』은 첩의 소생인 경우에는 모의 신분과 명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종친가현록(宗親加現錄)』의 수록 내용은 『선원록』의 등재 인물 수록방식과 유사하다.

(3) 『유부가현록(類附加現錄)』

『유부가현록』은 종녀(宗女)와 서얼(庶孽)을 수록한 왕실족보이다. 대군·군의 첩자손과 공주·옹주의 자손들 가운데 새로 파악된 인물을 수록하였다. 수록대상은 대군·군의 첩자손과 공주·옹주 자손을 5대손까지 수록하였다.

(4) 『선원가현십대록(璿源加現十代錄)』

『선원가현십대록』은 1681년(숙종 7)에 『선원록』이 작성되자, 이에 수록되지 못한 국왕의 9대 이하 자손을 13대까지 수록한 것이다. 즉 『선원록』에 남계는 9대손까지, 여계는 6대손까지만 수록하였으므로, 10대 이하 자손을 수록한 것이다. 따라서 보첩의 명칭도 『선원가현십대록(璿源加現十代錄)』 혹은 『선원십대가현록(璿源十代加現錄)』이라 하였다.

『선원가현십대록』의 기재 방식은 첫째 칸에 대군·군의 이름을 기재하

고, 둘째 칸에 9대손의 이름을 기재하고, 세 째 칸 이후에 10대손에서부터 13대까지 수록하였다. 『선원가현십대록』은 『선원록』에 수록되지 못한 남계 9대손 이하를 파악하기 위한 보첩이었으므로 당연히 아들만 수록하였다.

### 3) 『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記略)』

1679년(숙종 5) 2월 낭원군 이암(李儼)은 선원보계(璿源寶系)를 상고하고 또 공사(公私)의 문서를 모아 비교 종합하여, 와전(訛傳)된 것은 바로잡고 쓸데없는 것은 깎아 버리고, 서로 어긋나는 것은 변통시켜 정리가 정연(井然)하게 된 『선원보략(璿源寶略)』 1책을 숙종에게 올렸다. 숙종은 이 책이 상세하고 조종유파(朝宗流派)도 알기 쉽다고 하여, 창성군 필(泌)과 회원군 윤(倫)에게 교정하여 간인할 것을 명령하였다. 다음해인 1680년 정월에 간본에 틀린 부분이 많아 이간의 주관 하에 종부시에 교정청을 두고, 1681년 9월에 전후 교정을 마치고 『선원계보기략』이라하여 간행하였다.

『선원계보기략』은 1679년(숙종 5)에 최초로 간행된 후 1900년까지 약 220년 동안 104회 개간되었으며, 수정 후 간행되는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약 120회에 달한다. 『선원계보기략』의 분량도 1책에서 1700년(숙종 26)에는 2책, 1720년(숙종 4)에는 4책, 1735년(영조 11)에는 7책, 1760년(영조 36) 이후에는 8책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현존 『선원계보기략』은 장서각에 약 126종이 소장되어 있는데 완질본은 47종이며, 여기에 규장각에만 소장된 유일본 17종을 더하면 약 64종이 전한다.

『선원계보기략』은 간행시기에 따라 수록된 자손록이 다르다. 1679년본 부터 1759년(영조 35)본 이전에 간인된 『선원계보기략』의 보도(譜圖; 系譜)에는 태조·정종, 태종, 세종·예종, 성종 자손록이 생략되었고, 중종·명종 자손록에서부터 간행시 재위 왕의 자손록만 수록되었다. 1760년(영조 36)년부터는 이전 본에서 생략되었던 태조·정종, 태종, 세종·예종, 성종 자손록이 새로 『선원계보기략』에 수록되었고, 이어서 간행시 재위 국왕의 자손록까지 수록되었다. 1779년(정조 3)년부터는 진종과 사도세자 자손록이 『선원계보기략』에 수록되었고, 1892년

(고종 29)년부터는 도조·환조 자손록도 수록되기에 이르렀다.

『선원계보기략』에 수록된 왕친의 범위도 그 시기에 따라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1679년(숙종 5)에는 중종의 왕자와 성손(姓孫)은 4대까지, 공주·옹주 등 외손은 1대까지만 기록하였다. 그러나 선조자손은 숙종의 근친이기 때문에 내외구분하지 않고 제한 없이 수록하였다. 1719년(숙종 45)에는 제한 없이 수록하였던 선조의 자손을 성손은 10대까지, 외손은 7대까지만 수록하였다. 1760년(영조 36)에는 『선원계보기략』 보도에서 제외되었던 중종조 이전의 열성조 자손록을 붙이게 되면서 수록 대상이 내손은 4대로 축소되었고, 외손의 경우도 선조 이후로는 4대로 축소되었으나, 실제 『선원계보기략』에 수록된 외손은 3대만 수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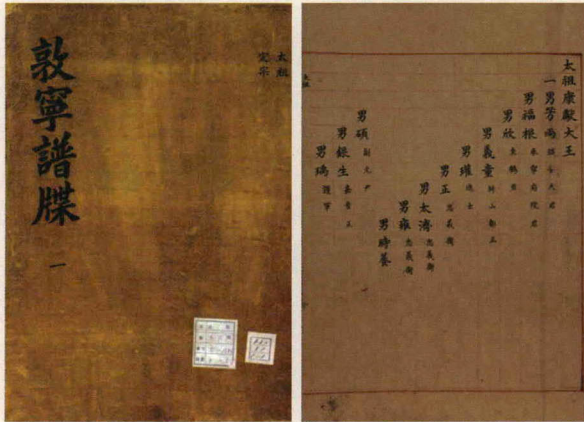
『선원계보기략』에서 자녀의 수록은 선남후녀(先男後女)로 하였고, 공주를 제 왕자의 위에 기록하였는데, 이러한 수록방식은 조선 후기 1908년(융희 2)분까지 일관되게 지켜졌다.

다른 왕실보첩이 필사본인데 비하여 『선원계보기략』은 목판본으로 간인되었다. 1679년(숙종 5)에 간인한 이후 120여 차례나 개간되었는데, 이때 앞서 판각한 책판을 활용하고 새로 첨가되는 부분만을 첨록하는 방식으로 간행하였다.

#### 『선원계보기략』에서

자녀의 수록은 선남후녀(先男後女)로 하였고, 공주를 제 왕자의 위에 기록하였는데, 이러한 수록방식은 조선 후기 1908년(융희 2)분까지 일관되게 지켜졌다.

4) 『돈령보첩(敦寧譜牒)』



07 『돈령보첩』 : 대왕편과 왕후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 식년(간지에 子, 卯, 午, 酉가 들어가는 해)마다 2부씩 작성되었다. 왕친은 대왕편에 수록, 왕후·세자빈의 친족은 왕후편에 수록 되었다.

『돈령보첩』은 성종대부터 작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나, 임진왜란으로 모두 소실되어 1649년(효종 즉위년) 다시 작성되었다. 『돈령보첩』의 재작성 동기는 족친위의 모록을 막고, 왕실 친족의 예우를 위한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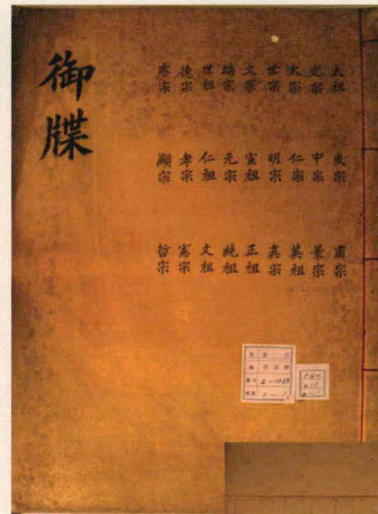
『돈령보첩』은 대왕편과 왕후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돈령보첩』의 작성은 매 식년(간지에 子·卯·午·酉가 들어가는 해)마다 2부씩 작성되었는데, 이를 정안(正案)과 차안(次案)이라 하였다. 돈령부에서는 3년마다 『돈령보첩』을 작성하기 위해서 족보청을 설치하고 돈령단자를 받아 정리하였다.

『돈령보첩』은 왕실의 혈통을 기록하기 위한 보첩이 아니라 돈녕부의 공문서적 성격을 가지므로 다른 왕실 보첩과 달리 대상자 위주로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선원보첩류에 비해 수록 인원이 적고, 차서도 출생 순으로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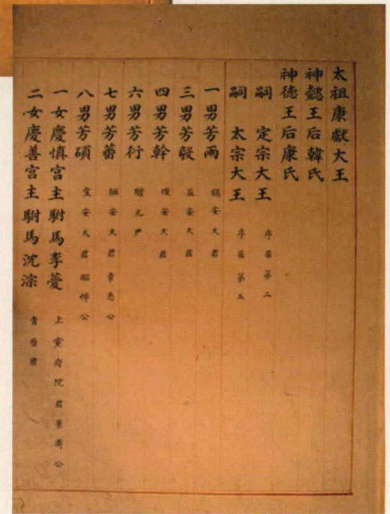
『돈령보첩』의 수록대상은 왕친, 왕후, 세자빈의 친족이다. 이들 중 왕친은 『돈령보첩』 대왕편에 수록하고, 왕후·세자빈의 친족은 『돈령보첩』 왕후편에 수록하였다. 1681년 이후 부터는 『돈령보첩』의 수록대상 범위가 종성(宗姓)은 9대손, 이성(異姓)은 6대손까지 수록하였다.

왕후편에 수록 대상자는 왕후의 동성(同姓)은 8촌(왕후의 先代로 4대, 下代, 4대)이고 이성(異姓)은 5촌(왕후의 선대 3대, 하대 3대)이 내며, 세자빈의 동성(同姓)은 6촌(세자빈의 선대 3대, 하대 3대)이고 이성(異姓)은 3촌(세자빈의 선대 2대, 하대 2대) 이내의 촌수이다.

5) 『어첩류(御牒類)』



08 『어첩』 표지와 내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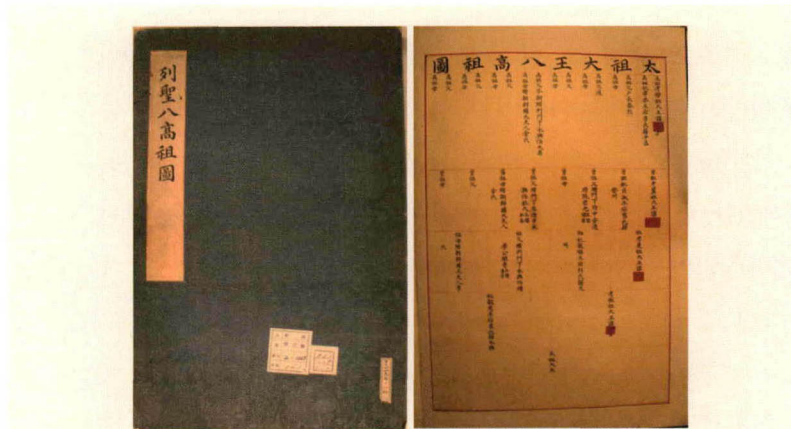
어첩류에는 『국조보첩(國朝譜牒)』, 『보첩(譜牒)』, 『어첩(御牒)』, 『조선국보(朝鮮國譜)』 등이 있다. 『어첩』류 가운데 가장 오래 된 것은 『조선국보』이다. 『조선국보』의 필사 시기는 동 보첩의 문말에 “주상전하 비김씨광성부원군만기녀 일녀 조졸(主上殿下 妃金氏光城府院君萬基女 一女 早卒)”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680년(숙종 5)경으로 추정된다. 수록방식은 전주이씨 시조에서 17대 양무(陽茂)까지의 명(名)과 관직을 기록하였다. 그 다음으로 목조에서 숙종까지 국왕과 왕비를 기록한 다음 자녀들을 선남후녀 형식으로 기록하였다. 왕자들의 차서도 출생 순에 따라 수록하였다. 이러한 형식은 사가족보의 가첩(家牒)이나 가승(家乘)과 유사한 기록방식이다.

## 6) 『열성왕비세보(列聖王妃世譜)』

선초에 한언(韓瑗)과 민반(閔泮) 등이 왕의 명으로 『왕비세보』을 찬술하였으나 전해지지 않는다. 1681년(숙종 7)에 『왕비세보』 3권이 처음으로 종부시에서 작성되었다. 이때 찬술된 『열성왕비세보(列聖王妃世譜)』는 왕비의 선대를 직계만을 중심으로 수록한 족보로 8권 3책이다. 그런데 『열성왕비세보』가 왕비의 친족을 관할하는 돈령부에서 작성되지 않고 종부시에서 작성된 것은 처음 『열성왕비세보』의 작성이 종부시에서 편간하는 『선원계보기략』·『종친록』·『유부록』의 수정 작업을 통해 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열성왕비세보』는 1735년(영조 1)에 개수되기 시작하여 1757년(영조 33)부터는 정례화 되어 모두 약 55회 개수되었다.

왕비를 여러번 배출한 성관은 보첩의 앞부분에 나오는 왕비편에서 성관 계통을 상세히 밝히고 나중에 기재되는 왕비편에서는 단지 근파만 기재하였다. 『열성왕비세보』에는 왕비의 부모 즉 국구·부부인의 비지(碑誌)를 기록하여 왕비의 부계와 모계의 선대를 상세히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열성왕비세보』의 편찬체제는 조선 후기 사대부가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간행하였던 외보와 비슷하다. 차이점은 사가의 외보는 대체로 시조에서부터 배위까지의 한단씩 내려가며 일직선상의 조(祖)을 기술한 반면에, 『열성왕비세보』 왕비로부터 일직선상의 조(祖)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전기사항을 기술한 점이다.

## 7) 『열성팔고조도(列聖八高祖圖)』



09 『열성팔고조도』 : 왕을 중심으로, 왕의 부와 모, 왕의 부(父)의 부와 모, 왕의 모(母)의 부와 모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아래에서부터 고조대(高祖代)까지 작성하는 족도이다.

『열성팔고조도』는 역대 왕과 왕비의 팔고조도를 합한 것이다. 작성방식은 왕의 팔고조도의 경우에는 왕을 중심으로, 왕의 부와 모, 그리고 다시 왕의 부(父)의 부와 모, 왕의 모(母)의 부와 모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아래에서부터 트리 형식으로 고조대(高祖代)까지 작성하는 족도이다. 따라서 전체의 반은 여성이며, 전체 31명이 기록되나 왕과 동성인 직계 선조는 부·조·증조·고조 이렇게 4명이고, 나머지 27명은 넓게 보면 왕의 외가인 타성이다. 이와 같은 왕실의 『팔고조』가 작성되기 시작한 것은 고려 시대의 팔조호구식의 영향을 받아 조선 초기에서부터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왕실에서 『열성팔고조도』를 본격적으로 작성되기 시작한 것은 1683년(숙종9)에 운흥군 이영(雲興君 李瀛)이 숙종에게 자신이 찬한 『열성팔고조도』를 올리면서 부터이다. 1734년(영조 10)에 원계수 이엽이 영조에게 『열성팔고조도』와 『열성왕비팔고조도』는 국가의 중요한 보물이므로 사가에 두지 말고 가져다가 간행하여 『선원계보기략』에 붙이기를 청하였다. 이에 영조는 1734년(영조 10)에 왕의 팔고조도를 작성하는 체제를 정하고, 『열성팔고조도』를 작성하여 보각에 보관하였다. 이후 정조대에는 팔고조도 역시 보첩이라는 정조의 해석에 따라 『선원계보기략』과 『국조어첩』에 붙여 간행되었다.

『열성팔고조도』는 왕과 왕비를 중심으로 한 내외 양계 조상의 혈통 유래를 밝힌다는 측면에서 왕실에서 중요시 여겨진 보첩의 일종이다. 『열성팔고조도』는 크게 2종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주상전하팔고조도(主上殿下八高祖圖)』처럼 1인의 왕과 왕비의 '팔고조도'만을 작성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역대 국왕과 왕비의 팔고조도를 작성하여 첩한 『열성팔고조도』이다.

### 8) 『선원속보(璿源續譜)』

『선원속보』는 각 왕의 왕자를 파조(派祖)로 하는 파보를 모아 놓은 것으로 사가족보(私家族譜)의 대동보와 유사한 것이다. 『선원속보』는 철종이 왕실권위를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한 것을 대원군이 1867년(고종 4)에 전주이씨 101파를 수록하는 『선원속보』를 간행하였고, 초간 이후 30년 만인 1900년(광무 4)에 110파로 증보되었다.

『선원속보』의 구성은 대체로 사가족보와 같은 형태이나,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배위(配位; 배우자)의 경우에 배우자만을 기록하고, 사가족보에서 수록하는 배우자의 4조나 현조 등은 기록하지 않았다. 간지는 승정(崇禎) 이전은 황명년호(皇明年號)로 기록하고, 이후는 열성왕조역년(列聖朝歷年)으로 기록하였다. 통상 사가족보에서는 외손을 수록하는 경우가 많은데 『선원속보』에는 “호양지폐(浩穰之弊)”를 막는 명분으로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

## 3. 왕실 보첩의 특징

조선의 왕실에서는 건국 초부터 고려왕실의 전통을 계승하여 『선원록』을 작성하였다. 이후 왕실보첩은 20여 종이 간행되었다. 『선원록(璿源錄)』, 『종친록(宗親錄)』, 『유부록(類附錄)』, 『종친록유부록합본(宗親錄類附錄合本)』, 『당대선원록(當代璿源錄)』, 『선원가현록(璿源加現錄)』, 『종친가현록(宗親加現錄)』, 『유부가현록(類附加現錄)』, 『종친록유부가현록합본(宗親錄類附加現錄合本)』, 『선원가현십대록(璿源加現十代錄)』, 『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記略)』, 『돈녕보첩(敦寧譜牒)』, 『어첩(御牒)』, 『열성왕비세보(列聖王妃世譜)』, 『열성팔고조도(列聖八高祖圖)』, 『선원속보(璿源續譜)』 등이 있다.

조선왕실에서 작성한 왕실보첩의 성격을 몇 가지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사가족보는 시조에서부터 족보의 간행 시점까지의 모든 자손들 수록하는 세보(世譜)이

66

조선의 왕실에서는  
건국 초부터 고려왕실의  
전통을 계승하여  
『선원록』을 작성하였다.

99

66

사가족보가 문중 중심의

사찬이었던 반하여

왕실족보는 종부시 등에서

편찬한 관찬이다.

이는 왕실족보가 왕과 왕비를

중심으로 하는 친인척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엄밀하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사가족보보다 훨씬 더 신뢰 할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99

다. 그러나 왕실보첩류는 『선원속보』를 제외하면, 왕과 왕비의 일정한 범위의 인척만을 수록하는 왕친보(王親譜)이다.

둘째 사가족보에서는 시조 이하 모든 자손들을 대체로 적서(嫡庶)를 구별하기는 하지만 모든 자손들을 하나의 족보에 수록한다. 그러나 왕실족보에서는 왕실의 혈연적 계통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계(祖系)를 서술한 것은 『선원록(璿源錄)』에 수록하였고, 종자(宗子; 대군·군의 자손)는 『종친록(宗親錄)』에 종녀(宗女; 공주와 옹주의 자손)와 서얼(庶孽)은 『유부록(類附錄)』에 수록하였다. 이처럼 왕실보첩은 국왕 소생의 혈연적 계통에 따라 별보로 작성하여 수록하였다.

셋째 왕실보첩에 수록된 인물의 전기사항은 사가족보에 비하여 매우 소략하다. 이는 왕실보첩의 작성 목적이 국왕과 수록자와의 인척관계상 친소를 확인하고, 그를 예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넷째 왕실보첩 가운데 『선원록』이나 『유부록』에는 사가족보나 다른 왕실족보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여성의 이름과 출생년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첩녀(妾女)인 경우에는 모(母)의 신분과 성명을 기록하였고, 딸이 후취로 혼인한 사실, 첩녀가 다시 양반의 첩으로 시집간 사실 등도 기록하였다. 그리고 초취와 후취가 있을 경우 자녀의 모(母)가 누구인지 명확히 기록하였다. 이런 점에서 왕실보첩은 조선 전기 여성사 연구의 중요한 자료이고, 아울러 조선 전기 '가족'을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이다.

다섯째 왕실보첩은 사가족보의 전범이 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선 후기 사가에서 유행하였던 『외보』나 『팔고조도』 등은 왕실의 『열성왕비세보』나 『열성팔고조도』 등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왕실보첩은 대부분 필사본으로 보통 2부 내지는 3부 소수만 작성하였으므로 모두 유일본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왕실보첩류 가운데 『선원계보기략』은 목판본으로 간인되었고, 『선원속보』는 금속활자와 목활자 등으로 간인되었다. 사가족보는 대체로 16세기에서 17세기 족보들은 필사본으로 작성된 경우가 많으나 18세기 이후 족보들은 목판본이거나 목활자본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사가족보는 필요에 따라 한 번에 다량의 족보를 간인하였다.

일곱째 사가족보가 문중 중심의 사찬이었던 것에 반하여 왕실족보는 종부시 등에서 편찬한 관찬이다. 이는 왕실족보가 왕과 왕비를 중심으로 하는 친인척의 기록이라는 점에서 엄밀하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사가족보보다 훨씬 더 신뢰 할 수 있는 자료라 할 수 있다.

#### 필자 소개

문학박사. 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현 충남대학교 연구교수로 재직. 고문헌과 관련된 다수의 논문이 있다.